

( 불 임 )

## 한국ECN증권(주)에 대한 증권업 허가

---

---

### I. 허가신청 내용

- 상 호 : 한국ECN증권 주식회사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10 SK빌딩 17층
- 허가신청 업무 :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한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매매의 증개 또는 대리 및 당해 증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 업무)
- 자본금 : 22,399,885,000원
  - 최대주주: 굿모닝증권, 대우증권, 동원증권, 삼성증권, LG투자증권 각 8억원(3.57144%)
  - 일반주주: 신영증권 등 23개 증권회사 각 7.99995억원(3.57142%)
- 임.직원 구성 : 임원 4명, 직원 22명
- 조직체계 : 본사1, 지점없음

### II. 허가업무 및 허가조건

- 허가 업무 :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
- 허가조건
  - 허가일로부터 6월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단, 증권거래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개시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것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허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허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기존 최대주주의 지위변동 없이 신규주주가 출자하는 경우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 유상증자 또는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지분변동이 불가피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증권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허가업무중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유가증권의 매매”는 착오매매 정정, 결제불이행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할 것